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2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계획 수립(안 제3조)
- 행위의 제한(안 제4조)
-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안 제5조)
- 안전점검 결과 조치(안 제6조)
- 관리감독(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잔류세균, 오염도등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5. 어린이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배치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안전점검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의 업무분담)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분담하게 한다.

제10조(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구 분	점 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